

# 허위 · 형식적 구직활동 사례

## ✓ 허위 구직활동이란?

- 1회적발시 해당 실업인정기간 부지급
- 2회 이상 적발시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

-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**부정수급**에 해당됨
- ◆ 사례: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원·응모한 것으로 관련 서류 등을 제출

## ✓ 형식적 구직활동이란?

- 1회적발시 사전고지(경고)
- 2회 적발시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

-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**구직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구직활동**을 한 경우

1 실제 입사지원 없이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한 경우, 단순 명함만 제출한 경우 

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 지원 

3 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

4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명함만 받아 제출하는 경우 

5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, 친구 등에게 면접 없이 확인서만 받아오는 경우 

6 수급자의 이력, 희망직종과 전혀 다른 채용 요건인데도 지원하는 경우 